

「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신규 특례사무(19건)

연번	특례사무명(관련법)	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1	(신규) 건축물 허가 (51층 이상, 20만㎡ 이상도 포함)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제1호	• 특례시장이 도지사 승인 없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㎡ 이상인 건축물 허가 권한 행사 → 특별법 제정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만㎡ 이상도 권한 행사 *현재 균형발전법에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㎡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‘도지사 승인’ 명시
2	(신규) 관광(단)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등	• 특례시장이 관광(단)지 지정 및 취소, 조성계획 승인 등에 대한 사무 직접 수행 → 지역의 관광자원과 개발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광지 개발 및 관리
3	(신규)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7조제1호가목 등	• 특례시장이 1·2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사무 직접 수행 *1종시설(용량 30만㎡ 이상저수지, 2천마력이상 양수장배수장, 국가관리 방조제, 하구둑) *2종시설(용량 30만㎡ 미만 저수지, 1~2천마력 양수장배수장, 지자체관리 방조제) → 지역농업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
4	(신규)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관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	• 특례시장이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·관리 →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 저감의 실효성 달성
5	(신규)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등	• 특례시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직접 제시 •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·해제 요청사무 직접 수행 → 지역의 교통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광역교통정책 추진
6	(신규)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「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	• 특례시장이 대부업자의 등록, 감독, 제재(영업정지 등), 분쟁조정 등 관련사무 직접 수행 → 지역금융환경과 이용자 보호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
7	(신규)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5조, 제56조	• (비점) 비점오염원*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권한 *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곳 (대지, 도로, 논, 밭, 임야, 대기 등) →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질오염 저감 정책을 보다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
8	(신규)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사무 「물환경보전법」 제74조, 제60조	• (기타수질오염원) 기타수질오염원* 설치(변경)신고 및 관리 권한 *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→ 특례시 실정에 맞는 수질오염원 관리
9	(신규)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 등	• 특례시장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(해제), 관리사무 직접 수행 → 특례시 실정에 맞는 산림보호구역 관리
10	(신규) 산업단지 개발 등 「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위한특별법」 제5조 등	• 특례시장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* 설치·운영사무를 직접 수행 *심의사항: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→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

연번	특례사무명(관련법)	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11	(신규) 수목원·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「수목원·정원의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」 제7조 등	• 특례시장이 수목원·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권한 행사 → 지역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수목원·정원 관리
12	(신규)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「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」 제47조제1항 등	• 특례시장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·징수 및 보고·검사, 과태료 부과 등의 관리사무 직접 수행 → 지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 가능
13	(신규)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6조 등	• 특례시장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및 운영 사무 직접 수행 → 지역교통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터미널 운영 및 관리
14	(신규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「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」 제3조 등	• 특례시장이 광고물 허가, 신고기준 조정 관련 사무 직접 수행 → 지역의 도시경관과 상업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
15	(신규)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61조제1항 등	• 특례시장이 생태계보전부담금*의 부과·징수 사무 직접 수행 *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 → 지역의 개발여건과 환경 보전 필요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
16	(신규)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감독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8조 등	• 특례시장이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관리권한 (등록·양도 및 사업자 변경, 폐업신고수리 등) 직접 수행 → 현재 공사업등록과 시공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업무는 시도에서, 공사의 적합여부는 시군구에서 담당하여 역할 분담이 이원화 되어 있어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관리·감독이 어려움
17	(신규) 주택가격 안정 규제에 관한 사무 「주택법」 제58조, 제63조의2	• (주택가격안정) 특례시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·해제과정에서 의견제시 →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충실히 고려한 정책 결정
18	(신규)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·변 경에 관한 사무 「주택법」 제72조제4항	• (리모델링) 특례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절차 배제 → 신속한 사업수행 가능
19	(신규) 폐기물 처리명령 및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업무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제1항 등	• 특례시장이 폐기물 처리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의 권한 행사 → 지역 내 폐기물 관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지도·감독 강화